

## 군산시 공고 제2021 - 18호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위법)의 폐지로 조례 설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 나.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우) 54078
- 전 화 : 063-454-3532, FAX : 063-452-817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 063-454-3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각1부.
  - 2. 의견서 각 1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폐지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폐지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1-19호**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대기환경보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를 재정비하고,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재정비(안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4조제2항제1호)
- 조례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안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 3. 의견제출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 전화 : 063-454-4463, FAX : 063-452-8165
- 전자우편: ssm41390@korea.kr

####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계(전화 063-454-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을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16호”를 “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를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로”를 “자동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위임된 -----</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u></p> <p>4. <u>“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u></p> <p>5.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4. ----- ----- ----- <u>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u> ----- -----.</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u>전</u></p>	<p>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u>전</u></p>

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군산시 관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생략)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생략)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

1. ----- 법 제2조제16호-----

2. (현행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생략)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적 지원) ① -----  
- 호의 -----  
----- 지원 -----  
-----.

1. (현행과 같음)

2. ----- 자동차를 -----  
-

3.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군산시 공고 제 2021 - 21호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우리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1. 5.

군 산 시 장

#### □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구 분	19세이상 주민 총수	연서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223,284명	4,466명	

#### ※ 기 타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행정지원과 ☎454-2243, FAX 454-22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 2020. 12. 31일 기준 ]

구 분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 (B)	주민총수 (A-B)	연 서 주민수	비고
	계	주민수	외국인 (영주체류 3년이상)				
<b>계</b>	<b>223,537</b>	<b>223,191</b>	<b>346</b>	<b>253</b>	<b>223,284</b>	<b>4,466</b>	
옥구읍	3,001	2,999	2	2	2,999		
옥산면	3,808	3,807	1	3	3,805		
회현면	2,947	2,944	3	1	2,946		
임피면	2,517	2,517	0	2	2,515		
서수면	2,419	2,418	1	2	2,417		
대야면	4,680	4,678	2	3	4,677		
개정면	2,817	2,817	0	5	2,812		
성산면	2,687	2,684	3	4	2,683		
나포면	2,090	2,090	0	7	2,083		
옥도면	3,160	3,157	3	4	3,156		
옥서면	2,795	2,794	1	2	2,793		
해신동	2,170	2,162	8	1	2,169		
월명동	5,039	5,014	25	20	5,019		
삼학동	5,278	5,264	14	10	5,268		
신평동	6,316	6,310	6	10	6,306		
중앙동	4,067	4,053	14	12	4,055		
흥남동	10,736	10,722	14	20	10,716		
조촌동	17,835	17,817	18	15	17,820		
경암동	6,696	6,689	7	5	6,691		
구암동	6,679	6,668	11	6	6,673		
개정동	2,496	2,492	4	3	2,493		
수송동	41,742	41,698	44	24	41,718		
나운1동	11,071	11,057	14	14	11,057		
나운2동	19,565	19,549	16	10	19,555		
나운3동	26,017	25,979	38	35	25,982		
소룡동	14,220	14,142	78	16	14,204		
미성동	10,689	10,670	19	17	10,672		